

인천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가단232620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지현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2. 4. 5.

판 결 선 고 2022. 5. 10.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8. 11. 9.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C은 2001. 2. 16. 구 주식회사 D(현 주식회사 E)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그 대금을 연체하였고, 위 회사는 2005. 4. 15.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주식회사 F에, 위 회사는 2011. 4. 26. G 유한회사에, 각 양도하고 C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G 유한회사는 C을 상대로 위 양수금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C은 위 회사에 8,738,652원 및 그 중 1,904,627원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2016. 10. 31.자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78797호)이 2016. 11. 18.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9. 2. 22. G 유한회사로부터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나. C의 아버지인 H은 2006.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9. 9. 10.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이 2018. 10. 20.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인 배우자 피고, 자녀 C, I, J은 2018. 11. 9. 위 아파트를 피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8. 11. 12. 접수 제407429호, 2018. 10.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C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K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발생한 것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C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피고 또한 이에 관하여 항변하지 않았다).

####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이슬

별지